

## 2020년도 제 7회 「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」 계약직(전문의) 직원 모집 공고

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 
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서울의료원에서는  
최고의 공공병원 실현을 위해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### 1. 직종별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

#### 가. 직종별 모집인원

직종(직급)	진료과	인원(명)	세부 응시자격	비 고
전문의A (계약직)	영상의학과	1명	<b>[필수사항]</b> · 의사면허증 소지자 ·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	
전문의B (계약직)	영상의학과	1명	<b>[필수사항]</b> · 의사면허증 소지자 ·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	

※전문의 A (주32시간 근무). 전문의 B (주40시간 근무)

#### 나.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공직자 및 「공직자 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,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
-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

## 2. 담당 업무

직 종	담당업무
전문의A (계약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직무설명서(첨부파일) 참조</li></ul> <p><b>※ 근무시간 (병원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)</b></p> <p>- 주32시간 근무 : 주3회 (1일 8시간) / 주2회 (1일 4시간)</p>
전문의B (계약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직무설명서(첨부파일) 참조</li></ul> <p><b>※ 근무시간 (병원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)</b></p> <p>- 주40시간 근무 : 주5회 (1일 8시간)</p>

※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

※ 서울의료원은 강남분원 운영 및 서울시로부터 동부병원·북부병원·서남병원을 위탁받아 수탁운영 중으로 강남분원 및 수탁병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수 있음

## 3. 근로조건

가. 보수는 서울의료원 규정에 따름

나.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은 「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취업규칙」에 따름

※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,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공무원 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됨

## 4. 시험전형일정

원서접수	1차 전형(서류전형)	2차 전형 (면접)	합격자 발표
	합격자발표	일시 및 장소	
2020.02.07.(금)~ 2020.02.17.(월) (16:00까지)	개별통보	개별통보	개별통보

※ 원서접수는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서 등록으로 함.(마감 16시00분)

※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5. 전형방법

가. 1차 전형 : 서류전형(55점)

- 심사기준 : 자격요건 적격여부 판단,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55점 만점으로 함

나. 2차 전형 : 면접시험(45점)

- 평가요소 :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

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, 의료인으로서의 정신자세

- 합격자 선발기준 : 2차(면접)전형시행 후 1차 전형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

다.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(MMPI)

※ 신체검사는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

## 6. 제출서류

- ① 입사지원서 1부
- ② 자기소개서 1부
- ③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(해당자) 1부
- ④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(해당자) 1부
- ⑤ 의사 면허(자격)증 1부
- ⑥ 전문의 자격증 1부
- ⑦ 경력증명서(해당자) 1부
- ⑧ 연구실적 (해당자) 1부

\* ① ~ ②항 서류는 공통사항으로 모두 제출(접수방법 : 의료원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)  
③ ~ ④항 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 해당자의 경우, 면접시험 당일 제출  
⑤ ~ ⑧항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(제출방법 등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),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

## 7. 기타사항

- 가. 1차 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나.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 및 인성검사를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미검사 또는 이상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.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,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이력서의 주소란에 항상 연락 가능한 현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.
- 마.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각 만점의 5~10%의 가산이 있습니다.
- 사. 장애인대상자는 장애인고용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수첩(복지카드)제출 시 서류 전형 시 5 점의 가점이 있습니다.
- 아.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는 최종 성적순에 따라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.(예비합격자 개별통보)
- 자.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단,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)
- 차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원조회(조사)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카. 이의제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운영팀(☎ 2276-809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02월 07일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